



[2019. 10. 8.] [30106 , 2019. 10. 8.,]

() 044 - 200 - 5821, 5820

() 044 - 200 - 5373

1 () 「 」 .
1 2() 「 」 (" ") 2 16 " 60

- 1. 「 」 2 2
- 2. 「 」 2 3

[2014. 11. 14.]

2 () 3 1 1 ()
3 1 1 가) 46 2 • 4 , 47 , 49
50 . , 3 1 1 가 가
. < 2014. 11. 14.>

3 (가) 6 1 가 (" ")
. < 2013. 3. 23.>

- 1.
- 2.
- 3. • •
- 4. ,
- 5. • • •
- 6. •
- 7.
- 8. •
- 9.
- 10.
- 11. •
- 12.
- 13. • •
- 14.

<2019. 6. 18.>

7 2 2

.< 2013. 3. 23., 2019. 6. 18.>

4 () 7 1 (" ")
)
, 「 (" • ") , • • (" ")
, 「 」 4 (" ")

. < 2013. 3. 23., 2019. 6. 18.>

") 1 10 31 (") .< 2013. 3. 23., 2019. 6. 18.>

2

3. 23.>

2 3

7 2 2

.< 2013. 3. 23., 2019. 6. 18.>

2

.<

2013. 3. 23.>

4 2() 7 3 1 가 (" ") 가 .<

2019. 6. 18.>

1. 「 」
2. 「 」
3. 「 , 」
4. 「 」
5. 「 」
6. 「 」
7. 1 6

1. 가

2. 가

3. 가

4. 가

[2018. 10. 2.]

4 3() 7 3 2 (" ") .< 2019. 6. 18.>

- 1.
- 2.
- 3.
- 4.
- 5.

1

[2018. 10. 2.]

5 () 8 1
(海圖)

< 2013. 3. 23.>

8 5 3 1 4

< 2014. 11. 14.>

6 () 10 3 1

7 () 14 2 2

7 2() 14 2 2 2 2

[2018. 10. 2.]

[7 2 7 3 <2018. 10. 2.>]

7 3() 15 3 (" ")

2 3 . < 2018. 10. 2.>

[2014. 11. 14.]

[7 2 <2018. 10. 2.>]

8 () 15 2 18 4
< 2013. 3. 23.>

8 2(가) 18 2 1 가
(" 가 ") 2 3 , (")
15 1 ") . <

2018. 10. 2.>

18 2 3 가

1. 18 2 2

2. 18 2 2

3. 2

18 2 4

1. 18 2 3 가

2. 가

18 2 8 가 30

, 가 .

1 4 가 , ,

[2014. 11. 14.]

9 () 29 2
(公賣) 가 (價額)
가 . < 2013. 3. 23.>
1

- 1.
- 2.
- 3.

1 「 」 .< 2013. 3. 23.>

10 () 34 3 " " .<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 1. <2019. 6. 18.>
- 2. <2019. 6. 18.>
- 3. <2019. 6. 18.>
- 4. <2019. 6. 18.>
- 5. <2019. 6. 18.>
- 6. <2019. 6. 18.>
- 7. <2019. 6. 18.>
- 8. <2019. 6. 18.>
- 9. <2019. 6. 18.>
- 10. <2019. 6. 18.>
- 11. <2019. 6. 18.>
- 12. <2019. 6. 18.>
- 13. <2019. 6. 18.>
- 14. <2019. 6. 18.>
- 15. <2019. 6. 18.>
- 16. <2019. 6. 18.>

1 .< 2014. 11. 19., 2017. 7. 26.>

34 3 " , , 가 1 (針路) .< 2019. 6. 18.>

- 1. 「 」 2 1
- 2. 「 」 2 2
- 3. 「 」 2 3 , 가
- 4. 「 」 2 1 ,

11 (가) 34 3 가 가 ()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가 가 .< 2014. 11. 19., 2017. 7. 26.>
 2 가 가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 가 10 3 가 , .<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4 가 .

12 <2015. 12. 15.>

13 (•) 40 2 • • (手旗) • (發光) • (旗旒) • .

14 <2015. 12. 15.>

15 (•) 46 2 5 " " . < 2014. 4. 8., 2016. 12. 30., 2018. 10. 2.>
 1. 「 」 23 100 500 .
 가 ()
 2. 「 」 2 1 3 가 (平水)
 가. 가 2 가 100
 . 가 100
 . 2 2
 . 100 2
 . 100
 3. 500 (浚渫船)
 <2019. 6. 18.>
 [2019. 6. 18.]

16 () 46 6 • 3 .

17 () 48 (" ") () . < 2013. 3. 23.>
 ()
 1. 18 1
 2.
 3.
 4. ()

5.

1

18 1

.<

[2013. 3. 23.>](#)

2

.< [2013. 3. 23.>](#)

1.

2.

3.

4. (가)

5.

6.

48 1

.< [2013. 3. 23.>](#)

1.

2.

3.

18 () 48 3

.<

[2018. 10. 2.>](#)

1.

2. 2 7

3. 11 . 7 . 1

4. 4 ()

48 3

(" ")

4

< [2018. 10. 2.>](#)

19 () 55 1 " "

[[2014. 11. 14.](#)]

19 2() 57 1 "

가 " 가

1.

2. (顛覆) (堪航能力)
(曳引)

3. (油類)

가. 「 」 2 5 : 30

. 14 1 1 (가) : 100

[[2015. 12. 15.](#)]

[19 2 19 3 <2015. 12. 15.>]

19 3() 58 2 (" ")
 4 2 .
 1 58 2 ()
 1)
 1. 58 1 . 1
 2. 1
 58 2 , 58
 2
 .< 2015. 3. 30.>

1. 58 1 .
 2. , 59
 4 .<

2016. 12. 30.>

[2014. 11. 14.]

[19 2 <2015. 12. 15.>]

20 () 60 3
 .< 2013. 3. 23.>
 1 . (「
 」 60 2) 가
 가 .< 2013. 3. 23.>
 1 .
 .< 2013. 3. 23.>

20 2() 97 3 1 .
 .

[2014. 11. 14.]

21 () 99 1 .
 , 1 5 , 8 8 3 「 」 2 「
 」 3 2 1 3 1 가 가
 , 6 , 7 8 2 (「 」 6 1 가
) .<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5.
 8. 19., 2015. 12. 15.>

1. 26 2 3

- 2. 27 1
- 3. 28 2 3
- 4. 29 1
- 5. 30 .
- 6. 58 .
- 7. 59
- 8. 101 1
- 8 2. 110 2 2 3 .
- 8 3. 110 3 8 10 .
- 9. <2015. 12. 15.>
 - 99 1 . , 5
 - 9 , 27 28 3 「 」 2 「 」
 - 3 2 1 3 1 가 가
 - , 24 , 25 28 (「 」 6 1 가
 -) .< 2012. 4. 10.,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4. 11. 19., 2015. 3. 30., 2015. 8. 19., 2015. 12. 15.>
- 1. 8 2 4 가
- 2. 9
- 3. 10 2
- 3 2. 13 2 가
- 4. 16 1 . 2 18 2 8 .
- 5. 26 2 3
- 6. 27 1
- 7. 28 2 3
- 8. 29 1
- 9. 30 .
- 10. 31 1
- 11. 31 2
- 12. 32 1 가
- 13. 38 ()
- 13 2. 42 .
- 14. 44 1 . . 3
- 15. 46 3
- 16. 47 1 1 4 . . . ()
- 17. 47 1 5
- 18. 49 1 . 2 . 5 . 6 , ()
- 19. 51
- 20. 53 1 .
- 21. 53 2

- 22. 54 1
- 23. 55 ,
- 23 2. 56 1 2 • 3 • •
- 24. 58 •
- 25. 59
- 25 2. 61
- 26. 98 4
- 27. 101 1
- 28. 110 2 2 3 •
- 28 2. 110 3 1 5 (4 5 53 1 2
) , 11 , 17 19 22 24
•
- 28 3. 110 3 8 10 •
- 29. 110 4 •

<2014. 11. 19.>

99 2 38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99 1

.<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 1. 12 4
- 2. 13 가, 가 , 가
- 3. 44 3
- 4. 98 1
- 5. 110 3 15 , 15 2 15 3 •
99 2 3

2013. 3. 23., 2014. 11. 19.>

22 () 101 2

.< 2013. 3.

23.>

- 1. • 가 가 가
- 2. , 가 가
- 3. 가
- 1
「 」

22 2() 2 ()

1. <2015. 12. 15.>

2. 16 : 2015 1 1

3. 23 5 : 2015 1 1

[2014. 12. 9.]

23 () 110 5 .

< 23373 ,2011. 12. 13.>

1 () 2011 12 16 .
2 () 15 1 100
200 .가 ()
2012 7 1 「 」 8 「 」 23

15 2 가 2 3
2 3 2 2012 7 1
「 」 8 「 」 23

3 () 14 14

4 ()
3 . , 6
3

5 () .
2 1 " " " 「 」 " , 4 가
(4) " 「 」 " " 「 」 " , 5
" " " 「 」 " , 6 " 「
」 " " 「 」 " .

2 1 7 .
7. 「 」
7 1 1 " 「 」 57 " " 「 」 10 " , 2 " 「
」 61 " " 「 」 14 " , 3 " 「 」 62 " " 「
」 31 " .

< 23717 ,2012. 4. 10.>

1 () .
2 () 5 2 , 2012 1 17

< 24443 ,2013. 3. 23.> ()

1 () . < >
2 5

6 () <136>

<137>

3 1 14 , 2 • 3 , 4 1 • 2 , 3 • , 4 • 5
, 5 1 , 8 , 9 1 , 2 , 3 , 17 1
, 5 , 2 , 3 , 4 ,
3 , 20 1 3 , 21 1 , 2 ,
3 • 4 • 6 , 22 1 , 3 3 4 3 "

" " " .
11 1 • 3 , 17 1 3 " "
" " .

<138> <146>

< 25299 ,2014. 4. 8.>

1 () . , 15 2014 4 8 .
2 () 110 3 8 10
가 21 1 (8 2) 21 2 ()
28 2) .
47 1 1 4 .
• • 가 가 21 2 16
49 1 • 2 • 5 6 • •
가 가
가 21 2 18 .

< 25728 ,2014. 11. 14.>

1 () 2014 11 15 . , 5 2 1) 3)
2015 3 25 .
2 () 58 • 59
가 21 2 24 25

< 25751 ,2014. 11. 19.> ()

1 () , 5

2 4

5 () <389>

<390>

10 1 , 2 , 11 1 3 , 21 4 5

" " " " "

11 4 " " " "

12 1 " (2 2

)" " "

12 2 2 21 5 " " " "

12 4 " " "

21 2 12 3 , 4 " 99 1 " " 99 2

" , " " " " , 6 " 99 2 " " 99 2 3 "

5 2 " " " "

<391> <418>

< 25840 ,2014. 12. 9.> ()

1 () 2015 1 1

2 16

< 26175 ,2015. 3. 30.>

< 26497 ,2015. 8. 19.>

< 26724 ,2015. 12. 15.>

1 () 2015 12 23

2 () 21 2 28

가 21 2 28 2

3 () 5 2
5 2 .

< 27747 ,2016. 12. 30.>

1 () . , 15 1 3 1

2 () 가 46 5
3
2019 12 31 .

< 28211 ,2017. 7. 26.> ()

1 () . , 8

2 7

8 () <324>

<325>

10 1 , 2 , 11 1 3 21 5

" " " " .

11 4 " " " " .

21 4 " " " " " , 5

" " " " " .

5 2 " " " " " .

<326> <388>

< 28243 ,2017. 8. 16.> () 19

< 29215 ,2018. 10. 2.>

1 () 2018 10 18 .

2 () 15 18 2 , 가
(19 1
) 2 3 1

< 29880 ,2019. 6. 18.>

1 () 2019 7 1 . , 10 , 15 2 2

2 ()
4 3

4 2 1

2
3 () 5 2
5 2

< 30106 ,2019. 10. 8.> (41)

1 ()
2 4
5 (「 」)
「 」 5
「 」 5 2 2)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14.>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제6조 관련)

구분	특정해역의 범위
인천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2. 북위 37도21분38초, 동경 126도26분29초(해리도) 3. 북위 37도20분04초, 동경 126도20분01초 4. 북위 37도18분58초, 동경 126도17분59초 5. 북위 37도17분52초, 동경 126도16분03초 6. 북위 37도16분40초, 동경 126도14분14초 7. 북위 37도12분33초, 동경 126도11분41초(대금도) 8. 북위 37도11분34초, 동경 126도11분01초(진두타도) 9. 북위 37도09분44초, 동경 126도09분17초 10. 북위 37도09분03초, 동경 126도10분33초 11. 북위 37도11분50초, 동경 126도12분35초(동백도) 12. 북위 37도15분59초, 동경 126도15분17초 13. 북위 37도19분08초, 동경 126도20분34초 14. 북위 37도20분07초, 동경 126도26분47초 15. 북위 37도16분48초, 동경 126도23분59초 16. 북위 37도14분26초, 동경 126도23분59초(서어벌) 17. 북위 37도12분16초, 동경 126도23분03초(부도) 18. 북위 37도11분10초, 동경 126도22분03초(통서) 19. 북위 37도09분04초, 동경 126도19분19초(금도) 20. 북위 37도07분28초, 동경 126도18분13초 21. 북위 37도07분00초, 동경 126도19분53초 22. 북위 37도08분58초, 동경 126도20분53초(부도) 23. 북위 37도09분40초, 동경 126도22분29초(적초) 24. 북위 37도13분24초, 동경 126도25분37초 25. 북위 37도15분41초, 동경 126도25분41초 26. 북위 37도16분28초, 동경 126도25분59초 27. 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6도27분31초 28.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부산구역	오륙도와 생도를 잇는 항계선과 오륙도 등대(북위35도05분27초, 동경129도07분38초)로부터 043도선 및 생도(북위35도02분13초, 동경129도05분36초)로부터 198도선이 북위35도03분59초, 동경129도07분52초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6.0마일 원호(圓弧)와 이루는 해역
울산구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 및 울산항 항계선이 이루는 해역
포항구역	<p>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2.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9분45초 3. 북위 36도03분21초, 동경 129도29분45초 4. 북위 36도06분33초, 동경 129도33분32초 5. 북위 36도04분36초, 동경 129도36분05초 6.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6분47초 7.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8.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9.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27분04초 10.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여수구역	<p>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2.15.>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제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17분53초
2.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00분23초(용도)
3. 북위 36도13분41초, 동경 125도57분23초(황도)
4. 북위 36도07분29초, 동경 125도57분59초(어청도)
5. 북위 35도39분29초, 동경 126도05분59초(상왕등도)
6. 북위 35도20분11초, 동경 125도59분05초(횡도)
7. 북위 35도12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소비치도)
8. 북위 34도47분11초, 동경 125도46분53초(칠발도)
9. 북위 34도37분11초, 동경 125도47분53초(우이도)
10.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서거차도)
11.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5분41초(동거차도)
12. 북위 34도05분48초, 동경 126도36분11초(자개도)
13. 북위 34도10분12초, 동경 127도21분23초(역만도)
14. 북위 34도14분30초, 동경 127도32분04초(대두역서)
15. 북위 34도24분47초, 동경 127도54분10초(작도)
16.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04분52초(세존도)
17.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28분28초(고암)
18. 북위 34도40분11초, 동경 128도46분28초(남여도)
19. 북위 35도00분11초, 동경 129도07분52초
20. 북위 35도23분23초, 동경 129도28분32초
21.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8분52초
22. 북위 36도07분11초, 동경 129도35분52초
23. 북위 36도11분11초, 동경 129도27분52초
24. 북위 36도30분11초, 동경 129도30분52초
25. 북위 36도46분11초, 동경 129도31분52초
26. 북위 37도03분11초, 동경 129도28분52초
27. 북위 37도14분10초, 동경 129도24분52초
28.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6분52초
29.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2분52초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9. 6. 18.>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의2 관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00분11.0초 동경 129도34분29.0초
2. 북위 36도00분11.0초 동경 129도47분48.5초
3. 북위 35도30분00.0초 동경 129도39분14.9초
4. 북위 35도22분21.1초 동경 129도44분24.6초
5. 북위 35도15분10.9초 동경 129도39분44.5초
6. 북위 35도15분10.9초 동경 129도32분48.9초
7. 북위 34도53분58.3초 동경 129도14분28.8초
8. 북위 34도33분16.7초 동경 128도51분36.8초
9. 북위 34도23분30.2초 동경 128도34분29.9초
10. 북위 34도21분41.7초 동경 128도31분20.3초
11. 북위 34도21분41.7초 동경 128도06분41.5초
12. 북위 34도06분53.4초 동경 127도35분46.8초
13. 북위 34도02분09.3초 동경 127도23분23.8초
14. 북위 34도01분39.6초 동경 127도18분14.8초
15. 북위 33도49분26.9초 동경 127도18분14.8초
16. 북위 33도48분28.6초 동경 127도07분51.3초
17. 북위 33도45분25.4초 동경 127도15분27.2초
18. 북위 33도34분51.7초 동경 127도22분26.5초
19. 북위 33도24분45.3초 동경 127도21분58.2초
20. 북위 33도14분09.0초 동경 127도16분43.8초
21. 북위 33도03분24.6초 동경 127도06분51.1초
22. 북위 32도59분03.1초 동경 126도56분46.3초
23. 북위 32도54분17.5초 동경 126도48분42.5초
24. 북위 32도53분12.9초 동경 126도36분12.6초
25. 북위 32도51분00.2초 동경 126도31분42.5초
26. 북위 32도46분21.0초 동경 126도16분03.1초
27. 북위 32도50분12.5초 동경 126도01분16.1초
28. 북위 33도10분44.0초 동경 125도45분52.8초
29. 북위 33도20분11.3초 동경 125도44분16.1초

30. 북위 33도31분10.5초 동경 125도48분26.1초
31. 북위 33도42분20.1초 동경 125도59분43.4초
32. 북위 33도47분09.5초 동경 126도23분12.7초
33. 북위 33도54분24.5초 동경 125도34분08.9초
34. 북위 34도32분44.1초 동경 125도23분40.8초
35. 북위 34도49분19.2초 동경 125도22분14.9초
36. 북위 35도12분41.0초 동경 125도29분12.3초
37. 북위 35도12분41.0초 동경 125도39분08.8초
38. 북위 35도18분41.8초 동경 125도40분52.8초
39. 북위 35도26분18.0초 동경 125도46분02.5초
40. 북위 35도39분25.7초 동경 125도50분50.2초
41. 북위 35도49분33.1초 동경 125도49분45.9초
42. 북위 36도07분29.0초 동경 125도42분43.9초
43. 북위 36도07분29.0초 동경 126도35분42.3초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18. 10.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7조의3 관련)

구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p>1.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p>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p>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p>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p>
<p>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p>	<p>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p> <p>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횡단하는 해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p> <p>마.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파제제(波除堤)·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수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p>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사용 수역 면적 또는 매립 수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p>
<p>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p>	<p>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p> <p>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p>다.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p> <p>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집안능력을 20퍼센트 이

	<p>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p> <p>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파제제·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업을 하려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파제제·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p>
<p>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p>	<p>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p> <p>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p>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중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중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12. 30>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경력 기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 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 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 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 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격 기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 적인 의사소통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 적인 의사소통
	안전관리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 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 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 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인 원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 자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8.>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심사 경력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4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력 · 유사경력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p>나.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p>
3. 교육 경력	<p>다음 각 목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가. 「국제안전관리규약」(「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같은 규약에 따른 용어의 이해: 8시간</p> <p>나.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8시간</p> <p>다.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 8시간</p> <p>라. 안전관리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 16시간</p> <p>마. 해운 및 선박 운항의 기본지식: 40시간</p>

비고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심사경력, 학력·유사경력 및 교육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인증심사 업

- 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
3.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을 면제하고, 마목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교육
 - 나.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
 - 다.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마목에 따른 교육
 6.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위 표 제3호 가목 및 다목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기관·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19. 6. 18.>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p>1. 책임급 해사 안전감독관</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p> <p>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이 표에서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2. 선임급 해사 안전감독관</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p> <p>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p>

	<p>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p>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p>
--	--

비고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 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호	90	150	300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3호	90	150	300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	법 제110조	300	500	1,000

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1호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4호	90	150	300
바.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5호	90	150	300
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6호	90	150	300
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7호	90	150	3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8호	90	150	300
차.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9호	90	150	300
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0호	90	15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1호	90	150	300
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2호	90	150	3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3호	90	150	300
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4호	90	150	300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15호	90	150	300

<p>다.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p> <p>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p> <p>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5호의2</p>	<p>90</p>	<p>300</p> <p>150</p>	<p>300</p>
<p>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5호의3</p>	<p>90</p>	<p>150</p>	<p>300</p>
<p>머.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경우</p>	<p>법 제110조 제1항</p>	<p>600</p>	<p>1,000</p>	<p>2,000</p>
<p>버. 법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5호의6</p>		<p>300</p>	
<p>서.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25호</p>	<p>90</p>	<p>150</p>	<p>300</p>
<p>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p>	<p>법 제110조 제4항</p>	<p>60</p>	<p>100</p>	<p>200</p>
<p>저.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7호</p>		<p>200</p>	
<p>처.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8호</p>		<p>300</p>	
<p>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p>	<p>법 제110조 제3항제19호</p>		<p>200</p>	
<p>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p>	<p>법 제110조</p>	<p>300</p>	<p>500</p>	<p>1,000</p>

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2항제2호			
��.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3호	300	500	1,000
허.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고.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노.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도.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로.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모.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구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보.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소.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추월선이 지켜야 할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오.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조.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초.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코.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토.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	
포.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2항제4호	300	500	1,000	
호. 법 제78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3호	90	150	300	
구.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3호	90	150	300	

누.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정박선,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3호	90	150	300
두. 법 제91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4호	90	150	300
루. 법 제92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4호	90	150	300
무. 법 제9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4호	90	150	300
부. 법 제9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4호	90	150	300
수. 법 제9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4호	90	150	300
우.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 제3항제22호	90	150	300